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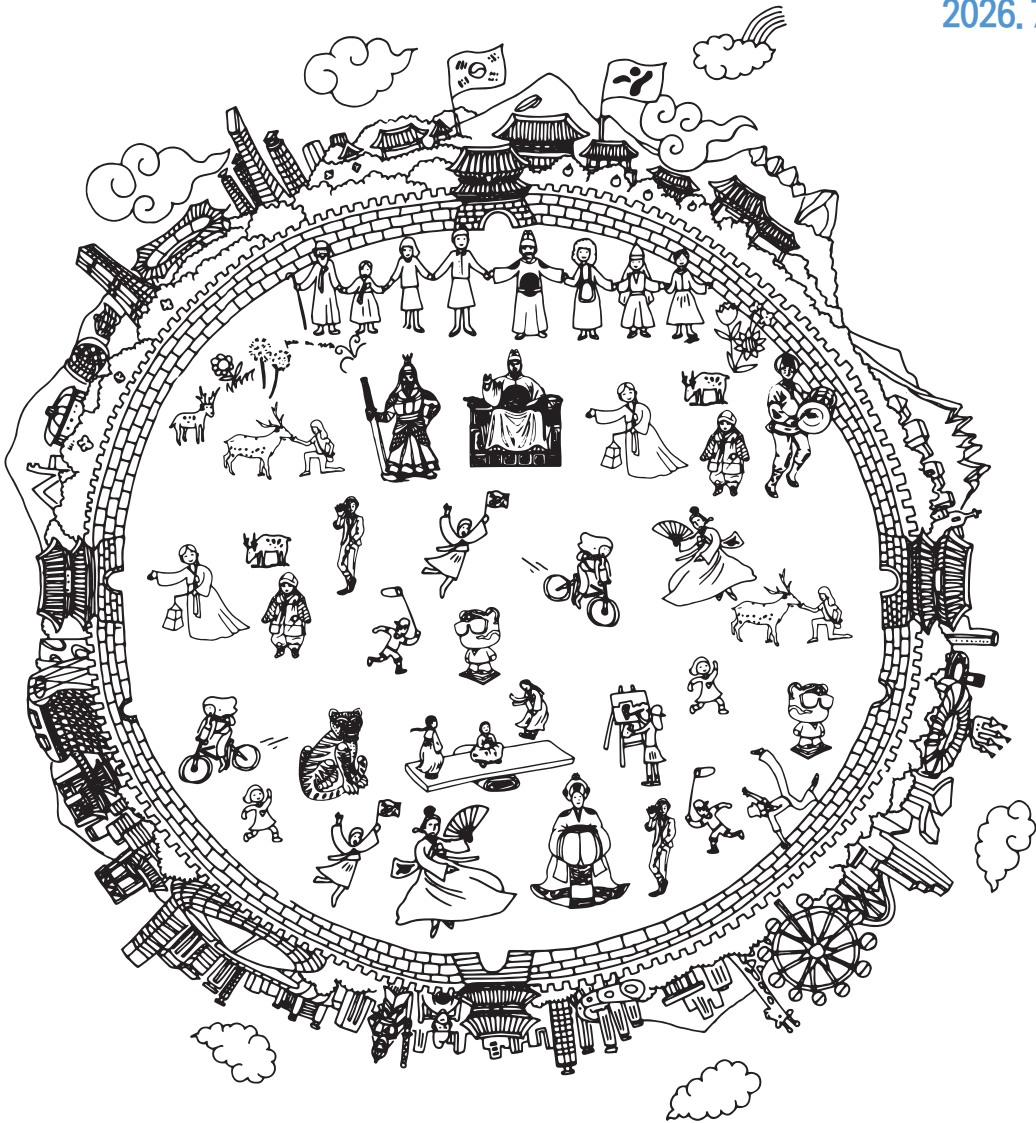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159호
2026. 7. 1.(수)



목 차

◆ 자치법규 등

[규 칙]

제2026-478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제2026-4783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

자치법규 등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2026-478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11,730	4,804	429	1,139	5,131	227
-----	--------	-------	-----	-------	-------	-----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689	4,754	420	349	4,941	225
-------	--------	-------	-----	-----	-------	-----

같은 표 5급 소계란, 행정란, 공업란, 행정또는공업란, 행정또는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급 소계	1,641	1,098	56	58	371	58
행정	750	550	52	26	71	51

공업	75	45			29	1
----	----	----	--	--	----	---

행정또는공업	15	13			1	1
--------	----	----	--	--	---	---

행정또는시설	85	69			13	3
--------	----	----	--	--	----	---

같은 표 6급 소계란, 행정란, 녹지란, 시설관리란, 행정또는사회복지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사무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750	1,983	180	105	1,383	99
행정	1,435	890	150	44	282	69
녹지	80	40			40	
시설관리	21	4			17	
행정또는사회복지	17	15	1			1
행정또는시설	61	58			3	
행정 · 공업또는시설	88	79			8	1
사무운영	27	9	1		16	1

같은 표 7급 소계란, 행정란, 공업란, 방송통신란, 조리란, 시설관리란, 기계운영란, 사무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256	1,317	122	131	1,629	57
행정	1,211	653	88	59	369	42
공업	399	19	6	10	362	2
방송통신	63	35	3	5	20	
조리	3	3				
시설관리	7	1			6	
기계운영	23	2	1		20	
사무운영	40	5	2	1	32	

같은 표 8급 소계란, 행정란, 시설관리란, 농림운영란, 사무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농업또는 녹지란 아래 전기운영란을 삭제한다.

8급 소계	1,060	115	34	41	869	1
행정	95	13	7	8	67	
시설관리	256			2	254	
농림운영	3				3	
사무운영	77	35	7	3	31	1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방단	구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방단
총계	11,730	4,793	429	1,140	5,141	227	총계	11,730	4,804	429	1,139	5,131	227
(생략)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10,689	4,743	420	350	4,951	225	일반직 계	10,689	4,754	420	349	4,941	225
(생략)							(현행과 같음)						
5급 소계	1,637	1,094	56	58	371	58	5급 소계	1,641	1,098	56	58	371	58
행정	751	550	52	26	71	52	행정	750	550	52	26	71	51
(생략)							(현행과 같음)						
공업	76	46			29	1	공업	75	45			29	1
(생략)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공업	13	12			1		행정또는공업	15	13			1	1
(생략)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시설	81	65			13	3	행정또는시설	85	69			13	3
(생략)							(현행과 같음)						
6급 소계	3,740	1,975	177	106	1,383	99	6급 소계	3,750	1,983	180	105	1,383	99
행정	1,432	890	147	44	282	69	행정	1,435	890	150	44	282	69
(생략)							(현행과 같음)						
녹지	79	40			39		녹지	80	40			40	
(생략)							(현행과 같음)						
시설관리	23	4			19		시설관리	21	4			17	
(생략)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사회복지	16	14	1			1	행정또는사회복지	17	15	1			1
행정또는시설	57	54			3		행정또는시설	61	58			3	
(생략)							(현행과 같음)						
행정·공업또는시설	85	76			8	1	행정·공업또는시설	88	79			8	1
(생략)							(현행과 같음)						
사무운영	27	9	1	1	15	1	사무운영	27	9	1		16	1
7급 소계	3,257	1,316	122	130	1,632	57	7급 소계	3,256	1,317	122	131	1,629	57
행정	1,210	652	88	59	369	42	행정	1,211	653	88	59	369	42
(생략)							(현행과 같음)						
공업	401	19	6	10	364	2	공업	399	19	6	10	362	2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방송통신	62	35	3	4	20		방송통신	63	35	3	5	20	
(생략)							(현행과 같음)						
조리	2	2					조리	3	3				
(생략)							(현행과 같음)						
시설관리	6	1			5		시설관리	7	1			6	
(생략)							(현행과 같음)						
기계운영	26	2	1		23		기계운영	23	2	1		20	
(생략)							(현행과 같음)						
사무운영	40	6	2	1	31		사무운영	40	5	2	1	32	
8급 소계	1,073	117	37	42	876	1	8급 소계	1,060	115	34	41	869	1
행정	94	13	7	8	66		행정	95	13	7	8	67	
(생략)							(현행과 같음)						
시설관리	252			2	250		시설관리	256			2	254	
(생략)							(현행과 같음)						
농업또는복지	5				5		농업또는복지	(현행과 같음)					
전기운영	5				5		<삭 제>						
농림운영	4				4		농림운영	3				3	
사무운영	89	37	10	4	37	1	사무운영	77	35	7	3	31	1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총정원 변동 없이 직렬·직급 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및 필요분야 인력 재배치를 위해 직렬·직급 간 조정

－ 5급 +4명, 6급 +10명, 7급 △1명, 8급 △13명

◆ 서울특별시규칙 제2026-4783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서울아레나(대중음악 지원시설 포함) 운영·관리 및 서울아레나 일대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한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제3항제2호 중 “서울장학재단” 을 “서울미래인재재단”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2호 중 “상호협력·교류” 를 “상호협력·교류” 로 한다.

제21조제6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2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시유재산 토지정밀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사항” 을 “다음 사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에 관한 사항

별표 4 중 은평병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은평병원	내과, 정신건강의학과(일반·소아·노인·중독·재활),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	---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경제실) ① ~ ⑧ (생략)	제11조(경제실)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창조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설></u>	11. <u>서울아레나(대중음악 지원 시설 포함) 운영·관리 및 서울 아레나 일대 활성화에 관한 사항</u>
<u><신설></u>	12. <u>한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⑩ ~ ⑫ (생략)	⑩ ~ ⑫ (현행과 같음)
제17조(평생교육국) ①·② (생 략)	제17조(평생교육국)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교육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서울장학재단 운영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u>	2. <u>서울미래인재재단</u> ----- -----
3. ~ 23. (생략)	3. ~ 23. (현행과 같음)
④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평생교육기관 <u>상호협력· 교류</u> 에 관한 사항	12. ----- <u>상호협력·교류</u> -----

13. ~ 18. (생 략) ⑤ · ⑥ (생 략) 제21조(도시공간본부) ① ~ ⑤ (생 략) ⑥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 략) <u><신 설></u> ⑦ ~ ⑪ (생 략) ⑫ 토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8. (생 략) <u><신 설></u> 제22조(균형발전본부) ① ~ ③ (생 략) ④ 균형발전정책과장은 <u>다음사항</u>을 분장한다. 1. ~ 11. (생 략) <u>12.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혁신 지구 추진에 관한 사항</u> <u>13. ~ 17.</u> (생 략) ⑤ ~ ⑦ (생 략) ⑧ 서부권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 18.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도시공간본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14. (현행과 같음) <u>15.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도시 계획에 관한 사항</u> ⑦ ~ ⑪ (현행과 같음) ⑫ ----- -----. 1. ~ 18. (현행과 같음) <u>19. 시유재산 토지정밀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u> 제22조(균형발전본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다음 사항</u> -----. 1. ~ 11. (현행과 같음) <u><삭 제></u> <u>12. ~ 16.</u> (현행 제13호부터 제 17호까지와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1. ~ 12. (생 략)

<신 설>

⑨ (생 략)

[별표4] 서울특별시립병원별 진료과
(제93조제3항 관련)

병원명	진 료 과 목
	(생 략)
은평병원	내과, 정신건강의학과(일반·소아·노인·중독·재활), 신경과, 영상의학과, 치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1. ~ 12. (현행과 같음)

13.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혁신

지구 추진에 관한 사항

⑨ (현행과 같음)

[별표4] 서울특별시립병원별 진료과
(제93조제3항 관련)

병원명	진 료 과 목
	(현행과 같음)
은평병원	----- 소아청소년과, 치과, 재활의학과,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사무분장 정비 등을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상 소관 사무 명시 및 사무분장 정비

- (경제실)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 제정 등에 따라 창조산업과 소관 사무로 한류산업 육성·지원, 서울아레나 운영·관리 조항 명시
- (도시공간본부) 산업단지 도시계획 업무 이관(경제실 산업입지과→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및 신규사업 등을 반영하여 사무분장 명시
 - ▶ 도시계획과 :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 ▶ 토지관리과 : 시유재산 토지정밀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
- (균형발전본부) 사업 추진단계 전환에 따라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서부권사업과로 이관 (←균형발전정책과)
- (은평병원) 발달장애 아동 재활치료 강화를 위한 진료과목 변경 허가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신설, 영상의학과 폐지 사항 반영

나. 출자·출연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지도·감독 기구의 사무분장 현행화

-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의 관할 재단 명칭 변경 반영 (서울장학재단 → 서울미래인재재단)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